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31
----------	-----

2019년 4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이광호 의원(찬성의원 18명)
- 나. 제안일 : 2019년 3월 29일
- 다. 회부일 : 2019년 4월 3일
- 라. 상정일 : 제2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4월 22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광호 의원)

가. 제안이유

-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29조에서는 장애 차별 금지와 장애인의 참여 환경 조성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음.
- 2)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3)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하여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된 바 이를 반영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개정함(안 제3조제2항제4호).
- 2)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개정함(안제11조제1호)
- 3)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개정함(안 제1조, 안 제 2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 11조, 안 제12조의2, 안 제14조,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 진흥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19. 4. 8. ~ 4. 15.)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소지가 있는 용어를 개선하고, 법령과 조례 간 불일치하는 용어를 정비하며, 기타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가.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로 개정(안 제3조제2항제4호)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3. (생략)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u>건설기술자</u>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6. (생략) ③ (생략)	제3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1.~3. (생략) 4. ----- <u>건설기술인</u> ----- ----- 5.~6. (생략) ③ (생략)

- 안 제3조 제2항 제4호는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고자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¹⁾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법률 제14839호, 2017.8.14., 일부개정]

나. ‘심신장애’를 ‘심신쇠약’으로 개정(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심신장애’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용어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취지에 반할 수 있는바,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u>심신장애로 인하여</u>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5. (생략)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 ----- ----- ----- 1. <u>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u> ----- ----- 2. ~ 5. (현행과 같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심신쇠약이라는 용어는 법령에 따른 정의가 없고, 마음과 정신의 쇠약 또는 신체와 정신의 쇠약 등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심신쇠약’이 ‘심신장애’의 뜻을 대신하거나, 내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용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현행 법령(「민법」, 「형법」 등)에서는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장애(心神障礙), 심신미약/심신박약(心神微弱/心神薄弱) 등 심신(心神)을 마음과 정신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바, 심신장애(心神障礙)는 의사결정 능력 또는 책임능력 여부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위원의 해촉 요건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2016.2.3.)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해촉 조항을 포함한 서울시 조례 16개를 개정하도록 권고²⁾ (2018.10.31.)한바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사항 >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u>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u>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u>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u>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한편, 법제처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건강에 관하여 해촉 사유를 규정할 때 심신장애, 질병, 심신쇠약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심신장애’로 규정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있음.

< 행정자치부 제시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관련 입법 표준안 >

<p>제○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장관(각 부·처·청 등 기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2) 별첨 1. [시 일부 조례의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 법제처,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검토 >

IV. 검토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련 의견

- 현행 입법례에 따르면, 건강에 관한 해촉사유로 '심신장애', '질병', '심신쇠약' 등이 있는 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을 총칭하는 '심신장애'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심신쇠약'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허약해진 상태를 말하므로 심신장애의 범주에 포함되고, 위촉된 위원이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입법 표준안 제3호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입법모델과 같이 직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심신장애"로 규정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출처 : 법제처, 2015.12.1., 법령안 심사기준 -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검토, 법제소식 (2015년 12월호, 통권 제43호) p2~13 중 10p 발췌

○ 따라서, 법제처의 검토사항과 같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을 총칭하는 현행 '심신장애'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은 아닌지 또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예와 같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심신쇠약' 용어를 시민이 알기 쉽게 풀어 쓰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19P)에서는 심신장애를 정신질환으로 순화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안 제11조 제1호의 수정의견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신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또한, 안 제11조는 조 제목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은 ‘위원 해촉’으로 사용³⁾하도록 순화용어를 제시하고 있는바, 조 제목의 수정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현행	수정의견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 11조, 안 제12조의2, 안 제14조, 안 제15조).

- 불명확한 법령 내용은 법집행의 지연, 법적 다툼이나 법령해석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한자식 용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수정하여 시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체계의 편의성과 통일성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8판) 247p 발췌

“종전에는 해촉을 위촉 해제로 썼으나, 위촉 해제도 어렵고 ‘해촉’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촉을 사용하기로 함.”

<개정조례안 자구 정비 사항>

조문	현 행	개정안	비 고
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 에 따라 - 제60조 제2항 의 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 알법(70P) - 띄어쓰기
2조 1항	- 당해	- 해당	- 알법(161P)
2조 2항	- 제1항의 규정에도 -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1항에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알법(70P) - 알법(201P, 66p)
3조 2항	- 「고등교육법」 에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 「고등교육법」 제2조에 - 제2조의	- 근거 명확화, 띄어쓰기 - 알법(70P)
6조 1항	- 제107조 의 규정	- 제107조	- 알법(70P), 띄어쓰기
6조 2항	- 제1항의 규정	➡ - 제1항	- 알법(70P)
6조 3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제2항에 따른	- 알법(70P)
10조 1항	- 제8조 제3항의 규정 - 없는 한	- 제8조 제3항 - 없을 때에는	- 알법(70P) - 알법(221P)
10조 2항	- 제8조 제3항의 규정	- 제8조 제3항	- 알법(70P)
14조 2항	- 제9조의 규정	- 제9조	- 알법(70P)
12조 의 2 4항 제15조	-관하여	-	알법(41P)

별첨1. [시 일부 조례의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시 일부 조례의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포함한 모든 서울특별시 조례의 개정을 권고합니다.

서울시 조례 중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 및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7년 '자치법규 인권관련 실태조사'를 제안하여 추진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서울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인권친화적인 자치법규 제·개정으로의 유도를 통해 시민 인권을 제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조례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위원 위촉 해제 사유' 조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시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16조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문구는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는 만큼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보고서 최종전해는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강화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의 경우에도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된 부분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개정(’16.2.3)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위원 위촉 해제 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회 해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생략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의 위원 위촉 해제 사유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포함한 모든 서울특별시 조례의 개정을 권고합니다.

참고자료 :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해촉 사유 조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조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8년 10월 31 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1
----------	-----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이광호 의원 (1명)

찬 성 자 : 김정환, 박기재, 박순규, 이준형,
김기덕, 이광성, 최기찬, 김경우,
이병도, 김용연, 이세열, 정진술,
이승미, 이은주, 채유미, 최정순,
이현찬, 김동식 의원 (18명)

1. 제안 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29조에서는 장애 차별 금지와 장애인의 참여 환경 조성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하여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된 바 이를 반영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개정함(안 제3조제2항제4호).
- 나.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개정함(안 제11조제1호)
-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 11조, 안 제 12조의2, 안 제14조, 안 제15조).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진흥법」
-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로, “제60조제2항 의 규정”을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같
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
호 중 “「고등교육법」 에”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을 “「비영
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자”
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07조 의 규정”을 “제107조”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제8조제3항”으로, “없는 한”을 “없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12조의2제4항 중 “구성·운영에 관하여”를 “구성·운영에”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한다.

제15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중
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2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
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 6.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동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같
----- 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
음)

② ----- 어느 하
나-----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

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생략)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6. (생략)

③ (생략)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8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2. (현행과 같음)

3.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

4. ----- 건설기술인 -----

5.·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소위원회) ① -----

----- 제107조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생략)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계약 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③----- 제2항에 따른 -----

-----.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

----- 없을 때에는 -----
-----.

②제8조제3항-----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

축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5. (생략)

제12조의2(원가분석자문회의) ①
~ ③ (생략)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생
략)

②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
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
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
의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따로 정한다.

-----.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

2.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원가분석자문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구성·
운영에 -----
-----.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9조-----

-----.

제15조(위원회 운영세칙) -----

-- 운영에 -----

-----.